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8. (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1. 소형준 의원 외 11명 발의(의안번호 162호)

나. 회부일자: 2023. 8. 3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9. 6.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소형준 의원)

가. 제안이유

○ 공동육아 이용자 입장에서 인지도가 낮은 열린육아방 명칭을 공동육아방으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육아종합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게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이용료(연회비) 제도를 도입하고, 2009년 개관 이후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월곡 육아종합지원센터 쿠킹룸란과 오븐란의 사용료를 삭제하고, 발달치료 사용료 규정을 신설함.

또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도 서울시 다자녀 지원계획 발표 및 다자녀 가족을 위한 이용료 감면 확대 협조 요청을 시행하였음.

이에 발맞추어 우리구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감면규정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동육아방으로 명칭 변경(안 별표 1)
- 연간 이용료(연회비) 제도 도입(안 별표 2)
- 쿠킹룸 및 오븐 사용료 삭제(안 별표 2)
- 발달치료 사용료 신설(안 별표 2)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100분의 50 감면(안 별표 3 제8호)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3. 08. 21. ~ 2023. 08. 26.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에 따라 정책 기조에 맞춰 사용료감면 규정을 변경하고,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이용료 및 사용료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별표 3의 개정은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에 대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감면이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모두에게 50% 할인을 적용하여 다자녀 혜택 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사용료가 감면되는 시설 및 감면을 일부 개정				
구분	현 행		개정(안)	
	감면대상	감면율	감면대상	감면율
육아종합지원센터이용료및 사용료	8.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18세이하의 자녀가 3인이상인 가정	100분의50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100분의50

이는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두 자녀 이상인 경우 발급되는‘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 모두에게 감면 요율 50%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서울시의 다자녀 가족 기준 및 혜택 확대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 감면확대 요청으로 타 자치구도 다자녀에 대한 혜택 기준을 완화해 가고 있는 상황임.

현행 조례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2023년도 수입 추정액은 1억 2,462만원으로 세 자녀로 인한 감면 추정액의 2.2%인 278만원, 두 자녀로 감면대상 확대 시 추정액은 12%인 1,495만원¹⁾수입 감소가 예상됨.

조례 개정에 따른 수입액 및 감면액			
시설명	수강료	수입액(추정) (1-12월)	조례개정후 수입액 (동일추정)
		감면액(천원)	감면액(천원)

1) 조례 개정에 따른 감면 추정액

2자녀로 감면대상 확대시 2자녀 5,504(38%)의 1/3인 12%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14,955
천원 감면혜택 예상

※ 영유아(만5세이하) 자녀 양육 가구수 (출처: 행복이음, 2023년 7월기준)

구분	계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
성북구	14,531	8,000(55%)	5,504(38%)	1,027(7%)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장위)	· 놀이체험장 : 영유아2,000원 · 장난감대여 : 500~5,000원 · 치료실운영 : 30,000원/회 · 시간제보육 : 1,000원/h	46,114	46,114
		202	5,534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지원센터(보문)	· 놀이체험장 : 영유아2,000원 · 장난감대여 : 500~5,000원 · 놀이,문화강좌 :10,000~40,000원	60,547	60,547
		2,096	7,266
sb장난감도서관	· 장난감대여 : 500~5,000원	17,963	17,963
		485	2,155
합 계		124,624	124,624
		2,783	14,955
수입액		121,841	109,669

- 그 밖에 별표 1은 장위 행복누리 부모지원센터 내‘열린육아방’의 명칭을 ‘공동육아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장위 행복누리 부모지원센터 기능란 명칭 변경			
구 분		현 행	변경후
장위 행복누리 부모지원센터	기능	열린육아방, 시간제보육실 운영, 육아지원 등	공동육아방, 시간제보육실 운영, 육아지원 등

- 별표 2는 월곡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이용실적이 거의 없고 유아들 놀이 체험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쿠킹룸, 오븐 사용료 기준을 삭제하였고

월곡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사용료 기준액 삭제				
구분		사 용 료(현행)		변경후(삭제)
대관	쿠킹룸	2시간	30,000원	-
		초과시 (30분)	8,000원	
	냉난방시설	쿠킹룸	10,000원	-
	오븐	전 일	10,000원	

-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월곡)·부모지원센터(보문), sb장난감도서관의 사용료 기준액 중 놀잇감(장난감)

대여 사용료 기준에 연간이용료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놀잇감대여 사용료 기준 변경				
구분			현 행	변경후
놀잇감 대여	장난감	사용료	500원 ~ 5,000원	연회비 20,000원 이하
		비고	- 연체 시 1일 1점당 500원(최고 15일) 연체료 발생 - 연체 15일 이상 시 연체 일수만큼 대여 정지	- 납부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연체 시 1일 1점당 500원 (최고 15일) 연체료 발생 - 연체 15일 이상 시 연체 일수만큼 대여 정지

- 월곡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성북아이 발달치료실 신규 운영에 따라 발달 치료비 징수 규정을 신설하였음.

성북아이 발달치료 사업 신설에 따른 사용료 추가			
구 분		사 용 료	비 고
발달치료		회 당 50,000원 이하	신설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개정안은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자녀 혜택 기준이 완화함에 따라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료 및 사용료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개선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8. (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1. 양순임 의원 외 13명 발의(의안번호 163호)

나. 회부일자: 2023. 8. 3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9. 6.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양순임 의원)

가. 제안이유

- 청소년기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은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 공감능력 향상, 긍정적 인간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침. 이에,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 발굴·보급, 시설 이용 지원, 국제 교류 지원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북구 청소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함

나. 주요내용

- 목적을 규정하고, 청소년 문화활동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 ~ 제2조)
-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안 제4조)
-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규정함 (안 제6조)
-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입법예고
 - 기 간 : 2023. 08. 21. ~ 2023. 08. 26.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제정안은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북구 청소년²⁾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본 제정안은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목적)와 제2조(정의)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³⁾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2. “문화활동”이란 「문화활동 진흥법」 제2조제5호⁴⁾를 말한다.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성북구 청소년은 10,792명이며, 25개 자치구 중 6위

※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문화활동 지원 시책의 추진과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는 구청장에게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하고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음.

지원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의 방향 기본목표 및 방향
2.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3.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
4.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하여 필요한 사항

- **안 제6조**(지원사업)는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발굴·보급, 시설 이용 지원, 국제 교류 지원 등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1.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의 발굴·보급지원
2.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시설 이용 지원
3.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등 지원
4. 청소년 국내 및 국제 교류 지원
5. 청소년 축제·공연·경연대회를 등 활동 지원
6. 청소년의 달, 성년의 달 행사 및 축하카드 발송 등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제5호** “청소년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는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본 제정안은 청소년의 문화 향유와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47조⁵⁾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0조⁶⁾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는 등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및 다양한 사업발굴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
- 5) 「**청소년 기본법**」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 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8. (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1. 양순임 의원 외 13명 발의(의안번호 163호)
- 나. 회부일자: 2023. 8. 31.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9. 7.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양순임 의원)

가. 제안이유

- 일상생활에서 적절한 신체활동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로 구민의 신체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신체활동장려 추진계획 수립, 사업 규정(안 제4조)
- 신체활동장려사업(안 제5조)
- 신체활동장려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6조)

- 위탁운영 등(안 제7조)
- 참여자 지원(안 제8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입법예고
 - 기 간 : 2023. 08. 21. ~ 2023. 08. 26.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제정안은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절한 신체활동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등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본 제정안은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 장려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신체활동장려 추진계획 수립)는 신체활동장려 사업의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 됨.
- 안 제5조(신체활동장려사업)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체활동장려사업 외에 추가로 구청장의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장려사업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안 제6조(신체활동장려위원회 구성 등)에서는 신체활동 장려를 위한 위원회는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른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 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 됨.
- 안 제7조(위탁운영 등)는 신체활동 장려사업 육성을 위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함.
- 안 제8조(참여자 지원)에서는 신체활동 장려사업의 확산 및 전파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생활 속에서 건강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제1항7)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지고, 같은 법 제6조

7)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1항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2019.12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을 통해‘2021.12월부터는 지자체가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 국민건강증진법 」

제16조의2(신체제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 2021. 12. 4.]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 2021. 12. 4.]

- 참고로, 타 자치단체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강북구, 구로구, 노원구, 서대문구, 성동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 외에 광역단체를 포함하여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정 현황

[2023. 09. 01 현재]

■ 전국: 총 18개 자치단체

- 8)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자 치 단 체 명	비 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원구, 성동구, 구로구, 서대문구,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목포시, 김해시, 거제시, 여주시, 완주군, 광주광역시 남구, 대전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중구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8. (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9.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149호)
- 나. 회부일자: 2023. 8. 31.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9. 6.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근수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2019.12.3., 법률 제16666호)에 따라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2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안 제3조~제4호)
- 단장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안 제5조~제6조)
-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 평가 및 기록(안 제7조~제8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3. 07. 13. ~ 2023. 08. 02.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1항과 제5항⁹⁾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세부 운영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에 따라 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상황 시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본 제정안은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 마련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성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설치·운영 시 고려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4조는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성북구 자원봉사센터장으로 하고, 단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성북구 소속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등으로 규정하였음.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 2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신설

-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5조는 단장이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운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무팀(상황총괄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원단 간의 재난상황정보 공유와 자원 봉사활동 내역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유기적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안 제8조는 지원단의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와 기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단 운영 결과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본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성북구 실정에 맞게 마련하여 재난 수습의 필수 자원인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조정 및 지원하려는 것으로, 재난 현장에서 차지하는 봉사활동의 규모와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 판단되며, 재난 현장에서 전개되는 자원 봉사활동의 일원화된 조정과 배분을 통해 재난 상황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등에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8. (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9.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150호)

나. 회부일자: 2023. 8. 3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9. 6.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근수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심이동권 확대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사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보험료 납부·보장기준·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제외·보험증권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 및 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3. 07. 13. ~ 2023. 08. 02.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전동보장구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두 종류가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험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전동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 “전동스쿠터”는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보험급여 기준에 적용.

< 전동보장구 >



-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화와 장애인구 증가로 인해 전동보장구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필요 현황을 보더라도 사용자는 늘 것으로 예상되며,

<장애인 전동보장구 필요 및 소지 현황>

필요 및 소지별	전동보장구 종류별	2014		2017		2020	
		비율(%)	추정수(명)	비율(%)	추정수(명)	비율(%)	추정수(명)
필요	전동휠체어	9.5	154,581	8.5	131,512	9.1	133,193
	전동스쿠터	6.7	109,249	6.2	96,152	5.0	73,094
소지	전동휠체어	3.7	59,748	4.1	63,015	6.1	90,037
	전동스쿠터	3.2	52,456	2.6	39,578	3.6	52,510

<출처 : “통계청(2022), 「국가통계포털 참조」 >

-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성북구의 전동보장구 보급 대수는 전동스쿠터 213대, 전동휠체어 162대로 총 375대가 교부되어 있음.
- 「도로교통법」 상 전동보장구는 차마(車馬)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만을 이용해야 하며, 전동보장구는 시속 15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지만 이용자의 운전미숙 등으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인도의 고르지 않은 노면, 각종 장애물 등으로 인해 도로변으로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하지만 사고 예방이나 보험제도 등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어, 전동보장구 사용자와 피해를 입는 사람 모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보험료

지원을 함으로써 전동보장구 사고 발생 시 초래되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본 조례 제정에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며,

-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¹⁰⁾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한다고 사료 됨.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차원에서도 2023년 전동보장구 보험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전동보장구 보험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에 보조금(50%)을 지원할 계획으로, 대부분의 자치구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노원·강북·도봉을 포함한 20개 자치구 조례 제·개정하였음.

나. 주요내용

- 본 제정안은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동보장구 보험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 **안 제3조**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전동보장구 보험회사 선정, 보험료 납부, 보험의 보장기준,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장애인등의 보험 지원에 따른 내용을 구성함.

10)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안 제9조는 구청장이 전동보장구 보험 체결에 따른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을 확인 및 관리 하도록 규정함.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본 제정안은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필수적 이동수단인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에 대한 보험 가입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8. (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9.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153호)
- 나. 회부일자: 2023. 8. 31.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9. 7.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황원숙 보건소장)

가.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제1항 신설 및 동법 제3항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안」 및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개정 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안 제1조~제3조)
-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34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3. 06. 22. ~ 2023. 07. 12.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파기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지역보건법」 제34조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인용 조문을 기존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제3항으로, 부과기준은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조문의 내용 변경 없이 인용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제3조 개정 전·후 비교〉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	---

○ **안 별표**는 「지역보건법」 제34조 개정(2023. 3. 28. 시행)으로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¹¹⁾에서 같은 법 제22조¹²⁾의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파기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보건법」의 한도인 3,000만원 이내에서 그 위반 차수에 따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차등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근거 법령 변경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정비함.

〈안 별표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신설)	법 제34조 제1항	1000	2000	3000
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행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법 제29조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11)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12) 제22조(정보의 파기)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본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개정(2023. 3. 28.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8. (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9.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151호)

나. 회부일자: 2023. 8. 3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9. 6.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근수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현재 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 2개소, 민간(관리동)어린이집 1개소의 국공립 전환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와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2024년 상반기에 만료되는 시설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신규위탁 대상 : 돈암이수 어린이집, 드림 어린이집, 두산비쥬 어린이집
 - 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 위탁체 선정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항에 따라 기존 설치·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 보장
- 재위탁 대상 : 동선어린이집 등 18개소
 - 위탁체 선정 :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 결정
- 사업의 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첫째 돈암이수 어린이집 등 3개소가 2023년 6월 국공립으로 전환(2023년 6월 제2차 서울시 국공립확충심의 승인)예정임에 따라 현 설치·운영자에게 계약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려는 것이며, 소요예산은 리모델링(기자재비) 및 주민공동시설 개선비 등에 총 7억 6,000만원 임. (가정 어린이집 2개소 : 5억 4,000만원, 관리동 어린이집 개소 : 2억 2,000만원) 위탁대상 현황은 다음과 같음.

〈신규 위탁대상 시설현황〉

(단위: 명, 백만원)

어린이집명	소재지	원장	연면적	정원 (현원)	교직원	비고
돈암이수 어린이집	북악산로 844, 102-102 (돈암2동, 브라운스톤@)	고은비 (73. 5. 1.)	84.97㎡	20 (20)	7	2024. 3. 1. 개원 예정
드림 어린이집	동소문로34길24, 106-109 (돈암1동, 삼성@)	이희숙 (71. 4. 22.)	114.66㎡	20 (20)	7	
두산비쥬 어린이집	오패산로 46, 관리동 1층 (월곡1동, 두산위브@)	지숙 (70. 5. 15.)	255㎡	45 (31)	11	

- 둘째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중 동선어린이집 등 18개소의 위탁기간이 2024년 2월 29일, 3월 31일, 4월 30일,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5년간 재위탁하려는 것임. 위탁대상 현황은 다음과 같음.

〈재위탁대상 시설현황〉

연번	시설명(원장)	소재지(행정동)	현 위탁제(대표)	정원/현원	현 위·수탁기간
1	동선 어린이집 (정 민 자)	아리랑로 27-24 (동선동)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김 현 훈)	59/38	2019. 3. 1. ~ 2024. 2. 29.
2	루나밸리 어린이집 (백 희 경)	월곡로14길 26 관리동 1층 (월곡2동)	개인 (백 희 경)	30/28	
3	목화 어린이집 (권 현 수)	오패산로4길 39-1 (월곡2동)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합회 (김 석 남)	78/61	
4	안암 어린이집 (김 재 순)	고려대로8길 5 (안암동)	학교법인 승가학원 (김 영 철)	116/87	
5	정릉1동 어린이집 (송 선 희)	정릉로 300 (정릉1동)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 규 정)	64/47	

연번	시설명(원장)	소재지(행정동)	현 위탁체(대표)	정원/현원	현 위·수탁기간
6	새봄빛 어린이집 (오 수 연)	송인로 50 (길음2동)	개인 (오 수 연)	65/60	2019. 4. 1. ~ 2024. 3. 31.
7	아트리치 어린이집 (고 순 자)	돌곶이로8길 22 (석관동)	개인 (고 순 자)	107/103	
8	나리 어린이집 (남 경 희)	화랑로 242-5 (석관동)	개인 (남 경 희)	34/29	2019. 5. 1. ~ 2024. 4. 30.
9	월곡 어린이집 (김 윤 자)	오패산로16길 23 (월곡1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영광교회 (김 성 제)	65/50	
10	종암 어린이집 (송 영 정)	종암로23길 11 (종암동)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진흥회 (김 광 환)	110/62	
11	해솔 어린이집 (엄 귀 화)	돌곶이로34길 4-14 (장위2동)	개인 (엄 귀 화)	42/26	2019. 6. 1. ~ 2024. 5. 31.
12	가온누리 어린이집 (박 나 래)	송인로 50 (길음2동)	개인 (박 나 래)	88/80	
13	달빛하나 어린이집 (이 현 주)	장월로3길 47 (월곡2동)	개인 (이 현 주)	71/64	
14	돈암2동 어린이집 (장 효 정)	성북로4길 52 (돈암2동)	재단법인 청소년과사람사랑 (박 상 일)	75/56	
15	삼선 어린이집 (최 현 주)	삼선교로4길 147 (삼동)	주식회사 곰표 (김 혁)	62/52	
16	삼선뜰 어린이집 (정 수 현)	보문로29길 86 (삼선동)	개인 (정 수 현)	85/74	
17	성북 어린이집 (최 명 숙)	성북로4길 13-2 (성북동)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이 재 광)	78/58	
18	큰나무 어린이집 (이 진 실)	화랑로18길 74 (월곡2동)	재단법인 그리스도의 교회 (이 준)	55/28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 「영유아 보육법」 제12조제1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보육조례”) 제13조제1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어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성북구 어린이집 설치 현황〉

(2023년 8월 현재)

구 분	합계	국공립	민간	가정
성북구	194	86	56	52

-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¹³⁾, 「보육조례」 제14조제1항에서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하며,
-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국공립 전환 신규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므로 공개경쟁이 아닌 기존 운영자에게 운영권보장이 가능함.

< 영유아 보육법 >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1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재위탁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및 「보육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 한하여 재위탁
하는 경우이므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 사료 됨.

<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
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4.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 바, 본 민간 위탁
및 재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6.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8. (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9.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152호)

나. 회부일자: 2023. 8. 3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9. 6.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근수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창의적인 교육문화여가 제공을 위한 공간인 성북 청소년 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2023.12.31.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 현황
 - 시설명 : 성북 청소년문화의집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 107 (정릉동 1031-2, 3)
 - 규 모 : 연면적 1,353.84㎡ (지상 3층) 대지 1,527㎡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 31.(3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위탁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위탁사무
 - －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 청소년 문화의 집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 청소년의 자치·자율활동의 지원 등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동의안은‘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하‘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¹⁴⁾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2023.12.31.자로‘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적격 심사를 거쳐 민간위탁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자를 선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위탁현황은 다음과 같음

<성북 청소년문화의집 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시설현황	소요예산	위탁기간	운영주체	운영조직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 위치 : 성북구 솔샘로 107 - 규모 : 1,353.84㎡ (지상 3층)	662,564천원 (국 12,204천원) (구 650,360천원)	2021.2.1. ~ 2023.12.31. (3년)	(사)한국 스카우트연맹 (관장 : 박종국)	총 8명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¹⁵⁾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 하고 있어 민간 위탁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여가 활동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 청소년 창의존 운영 등을 통해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소이므로 청소년 정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곳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제공이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 구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조례」 제7조¹⁶⁾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

15)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12.31.)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
 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바, 본 사무의
 재위탁 추진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청소년 문화의 집 연도별 이용자 현황>

연도	유 아		청소년		성 인		계
	이용자수	비율	이용자수	비율	이용자수	비율	
2018년	6,603명	11%	36,861명	60%	18,102명	29%	61,566명
2019년	13,505명	14.3%	52,297명	55.4%	28,525명	30.2%	94,327명
2020년	1,374명	8%	12,720명	74%	3,168명	18%	17,262명
2021년	3,268명	9.8%	25,680명	77.1%	4,359명	13.1%	33,307명
2022년	4,938명	11.8%	30,343명	72.5%	6,588명	15.7%	41,869명
2023년 7월	2,861명	9.8%	19,719명	77.1%	4,683명	13.1%	27,263명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실적>

연도	구 분	청소년 목적사업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대관사업	기타	계
2018	프로그램	23	4	-	2	3	32
	참여인원	28,882	3,908	-	2,626	26,150	61,566
2019	프로그램	15	4	10	2	2	33
	참여인원	36,566	17,807	7,440	5,493	27,021	94,327
2020	프로그램	16	4	10	2	4	36
	참여인원	5,838	3,189	4,928	561	2,746	17,262
2021	프로그램	16	6	10	2	8	34
	참여인원	18,885	4,920	7,332	819	1,351	33,307

2022	프로그램	15	4	16	1	2	33
	참여인원	23,390	9,480	7,099	1,396	504	41,869
2023.7.	프로그램	7	120	9	2	2	140
	참여인원	12,212	5,584	8,085	1,075	307	27,263

5.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6.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